

의안
번호

33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09. 03.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양순임의원

나. 의안번호 : 제330호

다. 제출일자 : 2024. 08. 14.

라. 회부일자 : 2024. 08. 28.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시된 비치장소가 너무 적어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함에 장애가 되는바,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으로 방연마스크 비치대상지를 확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추가함(안 제3조제4호부터 안 제3조제9호까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8. 20. ~ 2024. 08. 26.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조례는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성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장려하거나 지원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연마스크 비치 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3조는 기존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임.

〈안 제3조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p>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현행과 같음)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현재 성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 전 센터와 성북문화재단 일부 시설에 총 817개가 비치되어 있으며, 구청은 9월 중 비치 예정임.

< 성북구 방연마스크 비치 현황(2024년 8월 기준) >

연번	센터명	방연마스크	비고
총 계		817	
1	경영지원실	27	도시관리공단
2	레포트센터	80	"
3	개운산센터	50	"
4	북악골프센터	50	"
5	물빛수영센터	50	"
6	구민체육관센터	60	"
7	월곡배드민턴센터	30	"
8	해오름스포츠센터/구민회관헬스센터	60	"
9	성북펜싱체육센터	60	"
10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	30	"
11	장위건강누림센터	30	"
12	거주자주차센터/견인보관소	30	"
13	공영주차센터	30	"
14	성북구청/보건소센터	40	"
15	아이조아센터	60	"
16	부모아이지원센터/sb장난감도서관	60	"
17	임대관리센터	30	"
18	종암동새날도서관	40	성북문화재단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연마스크 비치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방연마스크 비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소관부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대한 홍보와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됨.